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03
----------	-------

발의연월일 : 2026. 5. 18.

발 의 자 : 최혁진 · 이성윤 · 윤준병  
정혜경 · 전진숙 · 김문수  
임미애 · 윤종오 · 복기왕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 중심의 평가 잣대는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뇌병변 장애인을 근로 무능력자로 낙인찍어 노동의 기회조차 박탈해 왔음.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법적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62.7%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하는 등 고용 정책의 실패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 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

회 구성원으로 세우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나.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다.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법률상 핵심 직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9조).
- 라. 참여자의 선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참여자의 보호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기준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15조).
- 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실현하고,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권리중심 공공일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제9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일 자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

리를 발굴·육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참여자의 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법」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 방안

6.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실태 및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 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조사, 동료 상담 및 자조 모임 지원 등

2. 문화예술 활동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공연, 전시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

3. 장애 인식개선 활동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강사 활동, 장애 이해 증진 캠페인 등

4. 그 밖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참여자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를 선정할 때 장애의 정도, 근로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종중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자의 선정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참여자의 권익 보호) ① 참여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참여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참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조건의 보장) ①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근로지원인의 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치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자료 제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벌칙)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고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본다.